

'98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정병기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지난 '98년 2월 24일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는, 최근 결합채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허용 등의 추진으로 기업들의 부분별한 사업다각화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유지의 실익이 감소하고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있어 동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른 한편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인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98년 4월 1일부터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책의 양대축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채무보증제한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아울러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9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8. 4. 1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767호)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기존 채무보증 해소시한 연장사유를 규정(제17조의7)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① 1997년과 1998년에 연속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000년 3월말까지, ②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에 신규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001년 3월말까지, ③ 2001년 이후 신규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열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면서, 조기 해소의 추진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대규모기업집단에 한해서는 해소시한 연장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해소시한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① 2000년 3월 31일 현재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한 피보증회사의 합병·매각 또는 유상증자가 진행중이거나 ②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화의 또는 파산이 신청되어 해소시한 현재 이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연장을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때에는 최장 2001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해소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해소시한일 현재 채무보증 해소를 위해 피채무보증회사의 합병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채무보증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범위내에서 해소시한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보증회사가 영업 및 재무상황의 악화로 화의·회사정리 절차등이 진행중인 경우 사실상 채무보증의 기한내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채무보증의 해소를 추진함으로써 인해 당해 기업의 도산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소속 기업집단에게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외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해소시한의 연장을 인정할 것이다.

다만, 예외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악용을 막고, 채무보증의 조기 해소가 불가능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신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조항 유지 (제17조의5)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한 보증이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금번 법개정으로 '98년 4월 1일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을 완전히 금지하였으나, 기업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채무보증까지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 시행령상의 채무보증제한 제외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채무보증을 완전히 금지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3.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요건의 구체화(제17조제1항제5호)

소속회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집단으로서 신청회사들의 자산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 전체 자산액의 50% 이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도 소속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회사의 비중이 일정기준(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과거 심결례를 통하여 형성된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제외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회사의 규모가 과도하여 여전히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50%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주주의 실질지배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와는 달리 화의의 경우 화의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대주주의 지배력이 여전히 존속되므로, 화의신청회사의 비중이 높다 하여 그러한 기업집단을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지정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소속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4.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의 명시(제21조 제1항)

대규모기업집단을 매년 4월 1일까지 지정하도

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지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매년 1회 지정하도록 하였을 뿐 지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여타 후속조치(예: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통보일은 5월말)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실무관례에 따라 매년 4월 1일로 명시하였으며, 기업의 결산지연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한내 지정이 곤란해질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지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을 사유발생시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정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였다.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 및 제도변경에 따른 세부운영절차 보완(제20조의2)

첫째,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매년 4월말까지, 신규로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보증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확인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각각 30일씩 연장하였다(제1항).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액 현황 등 불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를 삭제한 반면, 신규채무보증의 금지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이외에 매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현황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다(제2항).

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를 원용하고 있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 제17조의3(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의 인정신청),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 및 제23조의2(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를 모두 삭제하였다.

알아봅시다

최종부도

1차부도는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을 당일 결제하지 못하고 다음날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일 결제해야 할 어음을 자금이 모자라 1일 영업마감시간인 하오 4시30분까지 결제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일 결제하면 1차부도로 처리된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까지도 지급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 최종부도 처리가 되면 당좌거래가 정지돼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1차부도에 그친 경우에는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게 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에 재생의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기업이 1차부도를 한 두 차례 내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부도가 네 번 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최종부도 처리된다. 최종부도 처리된 기업은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